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

정 태 현

I. 머리말

II.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의 필수조건
- 주권국가와 민주화

III. 식민지자본주의의 상징적 특징

IV. 맺음말

I. 머리말

상식적 질문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핵심적 사안인 원주민 문제를 넘어가더라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의 미국이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17세기 들어 영국은 네덜란드를 누르고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영국 선박 사용의 강제, 식민지에 대해서는 특산품만 장려하고 본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쟁상품 수출의 제한과 고율의 관세 부과 등 식민지 종속정책을 강요했다. 영국의 이러한 식민정책은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된 경제를 구축하려던 북미 이주민들에게 독립해야 한다는 이해관계로 뭉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 이후 비로소 미국이라는 국가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독일이 1871년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통일될 때까지 300여 연방으로 나뉘어져 근대국가 수립이 늦어 자본주의 초기에 유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도 자본주의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가의 문제였다. 통일국가 수립 이후 독일은 강력한 산업보호정책 등을 통해 이후 유럽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변신했다. 즉 자본주의 경제 운영의 결정적인 관건은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른 국가의 정책 유무에 달려 있다. 하물며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식민지 경제는 자본축적의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국내 자본가계급

이 지배해야 할 국가의 수립이 압살되고 자국산업을 위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일본제 국주의와 일본자본이 조선 사회의 경제운영과 정책결정의 주체가 된 경제였다. 이러한 경제를 식민지자본주의라 칭할 수 있다. 즉 식민지자본주의란 자국의 기업가를 뒷받침 할 국가권력이 없는 가운데 외래권력의 무력을 기반으로 식민지 사회에서 전개되는 자본주의의 운영과 현상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지적할 점은 근대경제학은 국가 없는 자본주의인 식민지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식민지라는 현실을 투영할 수 있는 인식들이 보완되지 않는 한, 근대경제학 방법론은 식민지자본주의 현상과 본질을 분석할 수 없다. 국가 주권의 문제와 민족운동에 대한 시야도 당연히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러한 근대경제학의 이론적 모순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면서 강자 독식의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론이 자본주의 실물경제 역사에서 필수 조건이었던 국가의 경제개입을 비판하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역사인식의 파탄으로 나아간다.

신자유주의는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미국의 세계 주도권이 횡행하면서 특히 투기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즉 국가의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투기적 금융자본이 타국에 대해 국가의 힘과 통제를 풀 것을 강요한 패권적 국제정치학의 역설이다. 오늘날 자본 특히 (투기적)금융자본은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신들만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한다. 시장논리를 내걸면서도 자신들이 진출한 지역의 국가가 자신들의 ‘자유로운’ 투기활동에 저촉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힘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¹⁾

이처럼 철저하게 불평등한 논리로 시장의 자유와 자율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이제 식민지 경제의 자본주의 ‘현상’에만 몰두하여 오늘과 미래의 인류평화 구축에 적대적이고 반인륜적인 식민사학을 서슴없이 수용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에서 이런 경향은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뉴라이트 집단의 근대경제학 경제성장론은 식민사학을 수용하여 일제의 지배가 시장을 통해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였다고 강조한다.²⁾

1) 정태현, 2008 <민주적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역할의 역사적 검토 - ‘조화 자본주의’를 향하여 - > 《역사비평》 84, 136

2) 나아가서 국가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으면서 한국인이 식민지 지배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능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건강부회의 주장을 한다. 《대안교과서 한국

본고의 문제의식은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체와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 자본주의의 출발지인 서유럽의 자본주의사를 통해 국가와 그 정책이 자본주의 경제 성립의 절대적 조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³⁾ 이를 위해 국가권력을 기반으로 한 유럽자본주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종종 조선총독부를 국가로 대치해서 이해하는 관성과 그것이 빚어내는 오류를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자국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가가 부재한 가운데 외래권력과 외래자본가가 지배하는 식민지 경제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관세주권과 금융주권의 부재에 대해 논함으로써 식민지 자본주의의 특징과 귀결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의 필수조건 - 주권국가와 민주화 - 4)

1.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엄마와 태아의 관계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 시장경제, 민주화의 상호관계와 대립을 통한 균형 추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행위 주체가 개인(가계), 기업, 정부(국가)로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이 세 범주 가운데 국가의 존재와 정책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고 확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었다.

너무나 자명한 이 명제를 종종 간과하곤 하는데 근대 자본주의는 자본가(기업가)와 시장경제만으로 성립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국가를 결여한 상태에서 이 두 범주는 자본주의 경제의 주체나 환경으로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유럽에서든 어디에서든 방임된 시장경제하에서 자본가의 힘만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전개된 경우는 없었다.

시장은 고대사회에서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조용히는 시장경제는 근대국

근현대사》(기파랑) 78 참조. 경제성장론의 식민사관 수용은 정태현, 2007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165~178 참조.

3) 19~20세기 유럽의 민주화가 국가의 무력에 의존한 대외침략적 자본주의 틀 내에 머물러 있었던 근본적 한계는 이 글에서 논외로 한다.

4) 본고의 2장과 3장 1절은 필자의 글, 2009 <경제성장론 역사상의 연원과 모순된 근현대사 인식>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동북아역사재단) 2-1(근대국가, 자본주의 성립의 기본 조건), 2-2(국가 없는 자본주의, 식민지자본주의)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가에 의해 창출되기도 하면서 조정되어 왔다.⁵⁾ 무역의 번성과 시장의 확대가 중앙집권적 국가를 요구하면서 봉건 영토와 도시로 분할된 국가의 통일에 가속화가 붙었지만, 국가가 자국기업을 위해 광대한 시장을 창출하기도 했다. 후진국일수록 그러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가 그러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주권국가를 갖게 된 구식민지 지역의 경제개발이 그러했다. 중세 유럽 사회의 분산된 각 지역을 시장과 상품의 힘을 통해 하나로 묶어낸 동력은 민족주의를 동반한 물리력을 행사한 주체로서 국가였다. 국가는 도시 영역을 넘어 시장을 전국화하고 전국적 상업망을 창출했다. 15~16세기에 국가는 폐쇄적 도시에 대해 중상주의 체제를 강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역과 원격지 교역을 분리하는 도시의 보호주의적 요소들이 없어지고 농촌과 도시, 그리고 도시들 사이의 경계를 없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 갔다.⁶⁾

자본주의는 ‘자유’와 ‘시장’을 구가한다. 그러나 이를 조율하는 국가의 개입과 주도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 원초적으로 내재된 것이었다. 근대 자본주의가 태아라면 국가는 태아를 배고 낳는 엄마였다. 엄마 없는 태아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었다.

국가는 자본축적의 씨앗이 되는 이윤 추구가 자본주의의 틀 자체를 유지하는 필수적 기제이기도 했다. 국가의 경제 개입은 더욱 세련되게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와 소비 같은 경제 활동은 사실 정치 활동이고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윤 추구는 자본주의 경제 운영의 기본 동기이지만 이윤추구가 지나치게 비생산적이거나 사회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탈하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 또는 모랄이 필요하다.⁷⁾ 이를 반영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기업가정신이다. 즉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국가의 역할 역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수적이었다.⁸⁾

유럽의 자본주의 경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원시적 축적을 형성할 때의 기본모델은

5) “자유시장으로 가는 길은 지속적이고 집권화되고 통제된 개입주의의 증대를 통해 열렸고, 그 열린 상태가 유지되었다. 애덤 스미스의 단순하고 자연적인 자유를 인간사회의 필요와 양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지극히 복잡한 일이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엔클로저 법들의 조항은 얼마나 복잡했던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 이후 중앙 당국이 처음으로 효율적인 감독능력을 발휘했던 신빈곤법 New Poor Law 을 집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료적 통제가 필요했던가. 혹은 바람직한 시정개혁을 위해 행정업무를 얼마나 증가시켰던가.”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이종태, 황혜선 역) (부키) 130~133

6) 김영진, 2005 《시장자유주의를 넘어서 : 칼 폴라니의 사회경제론》 (한울아카데미) 82

7) 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이종태, 황혜선 역) (부키) 307

8) 신광영, 1999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문학과 지성사) 33

국가권력의 지원을 절대적 배경으로 한 중상주의였다. 중상주의 초기의 중금주의정책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그러했듯이 근대국가와 근대적 화폐제도 수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 은을 아메리카 등지에서 약탈해 집적하는데 집중했다. 이는 본위화폐 제도 수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금이 본위화폐 제도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는 이를 위해 동인도회사의 경우처럼 식민지에서 징세권, 행정권, 군사권을 지닌 대규모 특권회사도 육성했다. 국가는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국의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정책을 위해 필요한 주요 수단으로서 관세제도를 채택했다. 즉 국내시장과 외국시장 개발을 위해 무역을 포함한 시장 전반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자본 육성에 집중했다. 이와 달리 식민지화 이전 조선에서는 외세에 의해 관세가 외국 차관을 위한 이권으로 활용되었다.

국가와 기업의 역학관계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달랐지만, 기업이 국가의 지원 없이 구성원에 대하여 사회적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신의 축적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가의 힘을 배경으로 성장한 기업가 집단 가운데 강자들은 국가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자본주의 세계화의 초기 단계로서 유럽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이었던 중상주의 시기의 동인도회사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국가의 무력을 바탕으로 대외침략의 길에 나섰다. 이후 유럽 지역은 선두주자 영국 따라잡기에 급급한 가운데 20세기 전반기까지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제국주의 침략의 길을 계속 걸었고 그 영역 확대를 둘러싼 두 차례의 대전쟁까지 치렀다. 유럽과 일본은 대외침략을 통해 타민족, 타국가와 그 구성원을 지배한 것이다. 유럽 각국과 일본의 국민경제 형성을 통한 근대국가 건설과 이들의 제국주의적 대외침략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즉 기업은 국가의 무력과 권위를 배경으로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다.

각국마다 경제력의 특수성에 따라 드러난 국가의 경제정책 차이는 해당 국가 내 기업가의 수준과 경쟁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한창 성장하기 시작할 때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경쟁력은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자유무역론으로, 후진국이었던 독일의 열등한 경쟁력은 리스트 경제학의 보호무역론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초기 단계부터 국가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을 통해 불륨을 키워갔다. 특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한 세기 동안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한 나라였다. 20세기 대공황을 계기로 국가의 역

할은 미국의 뉴딜정책, 독일의 나치즘과 군수산업 발흥, 스웨덴의 조합주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근대경제학 이론의 변천과 무관하게 실물경제에서는 케인즈 경제학 출범 이전부터, 훨씬 그 이전의 중상주의 단계부터 국가와 국가의 정책이 국민경제, 민족경제 형성에 필수조건이었다.

모든 유럽 각국의 자본주의는 국가의 힘을 바탕으로 자국산업 육성, 계급간 이해관계 조정, 대외 경제정책 수행을 통해 일국 내에서 자기완결성을 추구하면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⁹⁾ 이처럼 서구 자본주의 전개과정을 돌아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어느 국가에서든 자본의 출발점은 ‘민족자본’이었다는 사실이다. 민족자본은 기업가가 속한 국가의 힘, 이를 배경으로 창출되는 시장, 그리고 기업가가 속한 국가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일정하게 조율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축적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런데 일국 내의 민족자본은 대외침략을 통해, 즉 자본 운동이 본래 추구한 ‘세계화’ 과정 속에서 ‘제국주의자본’으로 변화했다. 민족자본은 제국주의자본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식민모국의 정책적 뒷받침과 무력에 힘입어 그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식민지민의 처지나 조건을 고려할 필요 없이 오로지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존재로 나타났다. 양자 사이에는 존재 조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2. 주권국가 하의 민주화와 생산성

한 사회, 특히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구성원들의 부가가치 생산능력 즉 생산에 참여하는 의지나 능력, 동기부여에 달려 있다. 그 평가 기준은 이윤추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련 조건이나 환경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정치경제적, 사회적 요소가 종합될 수밖에 없다. 즉 정부의 정책 및 그 정책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민주화 수준을 의미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¹⁰⁾

9) 정태현, 2009 <경제성장론 역사상의 연원과 모순된 근현대사 인식>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49~250

10) “국제경영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위한 세부 조사 항목은 전체가 314개인데, 경제성과 분야가 77개, 비즈니스효율성 분야가 69개이고, 인프라 분야가 95개, 그리고 정부 및 정치와 관련되는 정부효율성 분야가 73개이다”(조정관, 2006 <국가경쟁력과 정치사회의 개혁> 《大韓政治學會報》 14-1, 182~183

국가와 기업 간에 뒷받침을 주고받는 정당성이 구성원들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국민 경제 틀 속에서 이들의 이익이 다른 구성원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이념이¹¹⁾ 생명력을 갖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다른 구성원의 이익과 ‘함께 한다’는 논리가 수용되어야 비로소 기업의 사회적 리더십도 살아난다.

개인은 상품 소비자로서 그리고 고용노동자로서 임금을 매개로 기업, 부분적으로는 국가-정부와 관련을 갖는다. 시장경제 하에서 개인과 기업은 임금을 둘러싸고 분명히 이해관계를 달리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근대)국가는 양자의 조정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사회민주화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인류사를 돌아 볼 때 국가는 통치 범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절대적 권력체로 출발했다. 지역 토호나 영주들에게 제약을 받기도 했던 중세를 지나 중상주의 시대에는 절대주의를 표방한 왕-국가권력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근대 사회 들어 국가권력은 이전까지와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권력의 행사가 구성원의 사회의식 수준과 각 계층의 이해관계에 조응해야 하는 상대적 권력체로 전환되어 간 것이다. 물론 나치즘이나 일본군국주의, 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파시즘적 독재체제가 출현하기도 했지만 20세기 후반기 들어 외양상으로는 일반 민주주의적 양상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곳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물론 근대사회의 국가권력체가 가져야 하는 보편성이 무엇인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제도적 민주화를 거쳐야 한다는 대세는 세계 현대사의 흐름을 통해 일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주권이 구성원(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규범은 단순히 명분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이 명분과 달리 현실 국가권력이 주요하게 기반하는 민의 범주는 사회민주화 수준에 따라 재벌일 수도, 기업(부르주아) 일반일 수도, 폭넓은 시민사회일 수도 있다. 그만큼 근대국가가 정상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하고 고려해야 하는 민의 폭은 가변성이 넓다. 그 정도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이룩한 민주화 수준에 비례한다.

전반적으로 사회민주화 수준이 낮을 때 국가는 개인보다 기업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

11) 이는 민주화를 수반한 개방된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의 의지에 따른 거듭된 민주화 과정을 통해 사회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점차 배타성을 극복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의 공존과 존중을 통한 正體性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갖고 있다.

는데 기울어졌고 대내외적 경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수준이나 내용 역시 그에 상응한다. 일정하게 각 차원에서 사회민주화가 일정하게 제도화되고 생산력이 높아지면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헌법 규범에 따라 이해관계의 실질적인 균형추 역할을 하도록 압박을 받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만 민주화는 국가가 최대한 중립적 위치에 서 있도록, 적어도 그러한 외양을 드러내도록 끌어내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은 중세시대의 장애요인을 극복한 시장경제에서 비롯되었지만 민주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했다. 생산력과 민주화의 양자 관계를 先後의 순차적 발전단계로 추상화시켜 생산력 발전 이후에 민주화가 성취된다는 기계적이고 교조적인 논리는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 전혀 조응하지 않는다. 실제의 역사에서 두 범주는 서로 어우러지는 상호작용 속에서 양자의 성취가 비로소 가능했다. 세계의 근현대사를 되돌아 볼 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결여된 가운데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는 없었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기업과 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민주화 수준에 조응하여 기업과 구성원 개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책임의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던 전후 독립국도 대외적으로 점차 국가의 주권 행사 역량을 키우면서 대내적으로도 구성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워갔다. 오늘날 질곡을 견고 있지만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게 된 이면에 기나 긴 민주화투쟁과 이에 따른 민주화의 정치적 제도화를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다. 즉 권력의 독점과 배제 경향을 띠게 마련인 국가의 성격과 국가권력을 둘러싼 내외 환경이 바뀌어 가면서 생산력과 민주화의 순환논리가 정착되어 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 즉 이러한 과정이 역사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축적이 가능했던 것은 비록 종속성을 지녔더라도 일차적으로 국가 주권을 회복한 가운데 분단국가의 부실한 내용을 채우려는 민주적 사회분위기를 의식한 국가권력이 이에 능동적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정책을 실행한 결과였다. 기업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해줄 국가가 존재하지 않던 일제시대와 오늘날을 비교해본다면, 식민지체제의 청산 즉 독립 이후의 국가 수립이라는 것이 기업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¹²⁾ 하는 차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확연하다. 국가 주권을 회복한

12) 허수열, <식민지유산과 한국경제> 《식민지경제사의 쟁점과 과제》(2007년도 민족문제연구소

이후에 비로소 국가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 즉 길고 폭 넓은 수밖에 없는 민주화과정의 내실이 채워져 가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정치제도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의미로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경제성장이 민주화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대한제국이 국왕-황제와 양반의 나라였을 뿐이어서 나라가 없어졌을 때 일반 상민들은 이를 환호했을까? 그런데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대일본제국 역시 천황의 나라였다. 나라의 성격, 특히 政體를 선택하거나 바꾸는 것은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사안이다. 한반도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정체를 바꿔보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식민지 지배 하에서 민족운동 세력들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 되찾아야 할 새로운 국가의 정체를 공화국으로 설정하는데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국가 주권을 상실한 지 10년도 안되어 성립된 임시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이 되었다. 구성원들의 의식이 그만큼 변화된 것이다. 이후 민족운동 전선에서 전제헌 독립해야 할 국가의 정체는 모두 구성원-민의 주권에 기초한 나라였다. 해방이 되었을 때 일제의 오랜 동화정책 결과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 남아 있겠다거나 천황이 나의 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조선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당시의 자료를 보건데 그런 흔적이 뚜렷하지 않거니와 이후 60여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의 내용은 현격한 변화를 보였다. 국가 주권이 존재할 때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 비로소 국가의 성격과 내용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¹³⁾

현대의 사회과학 이론은 경제자유화나 사유재산권 보장 등 단순한 시장논리나 법적 제도화가 경제성장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반면에 부패 정도가 낮을수록 정치적 자유의 정도가 높고 소득분배의 평등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으며, 특히 지니계수로 추정된 소득분배와 1인당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¹⁴⁾ 확인되었다. 즉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배분기제가 소유형태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며 ‘규제된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를 보장하는 경제체제가 인간이 개발해 낸 사회시스템 가운데 아직은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라고¹⁵⁾ 평가할 수 있다.

학술토론회) 20

13) 반면에 오늘날 입헌군주국 중에서도 아마 거의 유일하게 각료의 명칭을 총리대신-大臣으로 칭하는 일본은 미군 점령기를 거쳐 오늘까지도 법적 변화와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천황의 나라이다. 이는 물론 일본 구성원들의 선택 문제에 속한다.

14) 최배근, 200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경제성과의 관계> 《산업경제연구》 17-3, 730~732

15) 아담 스미스, 1997 《민주주의와 시장》, (임혁백·윤성학 역) (한울아카데미) 34

분명한 사실은 국가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려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적 질, 즉 민주화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을 뒷받침하고 자본가를 육성하는 국가의 효율적 경제운영이 다양성 속에 통합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높은 성과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국가, 즉 독재체제 역시 단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없이 일정 수준에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는 지대효과 등 자원이나 부가가치 배분이나 생산성의 왜곡현상이 심해지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실사회주의가 드러낸 모순을 반추해볼 때 시장 없는 민주주의는 설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 없는 시장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계에 봉착하고 사실 그러한 체제는 결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¹⁶⁾

Ⅲ. 식민지자본주의의 상징적 특징

1. 국가의 不在-외래 식민권력으로서의 조선총독부

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조건에 대한 원론적 상식을 재확인하는 것은 식민지자본주의의 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먼저 흔히 범하는 잘못된 개념 사용의 예를 들어보자. 대표적으로 조선총독부를 ‘식민정부’로 칭하면서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지배 하의 조선사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했다거나 “전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총독”에 의한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국가”¹⁷⁾ 또는 “강한 국가”(강조는 필자)¹⁸⁾라는 표현처럼 많은 한국 연구자들도 식민권력을 국가 또는 정부라는 개념을 통해 관성적으로

16) “물론 싱가포르에서처럼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청렴한 관료제가 효율적인 시장지원을 해내는 예외도 존재”할 수 있지만(조정관, <앞 논문> 183~184) 도시국가-작은 국가는 정보소통의 범위가 넓어 권위주의적 국가권력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도 사회 각 분야는 그만큼 열려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한 “집단이나 방법들은 너무나 견고해서 이를 제거하려면 엄청난 게 높은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칠레 피노체트 정권의 자유화 시도 사례처럼 “급진적인 경제 자유화에는 가혹한 권위주의 정치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장하준, 2006 《국가의 역할》 (이종태·황해선 역) (부키) 139). 그러나 칠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요구보다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외부의 요구에 응한 사례이지 ‘경제 자유화’ 일반론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17) 김동노, 2006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의 독특성> 《동방학지》 133, 216

18) 김민철, 2003 <전시체제하(1937~1945) 식민지 행정기구의 변화> 《한국사학보》 14, 281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커밍스나 에커트 등 미국 학자들도 조선총독부 독재를 국가 주권을 갖게 된 이후인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바로 대치시켜 비견하기도 한다.¹⁹⁾

외래 식민권력인 조선총독부를 식민 ‘정부’ 또는 ‘국가’로 이해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 조선인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민의)를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입법부나 행정부(국가)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허구적 개념 사용에 불과하다.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체에 접근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

정부란 넓게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지만 좁게는 행정부를 가리킨다. 정부가 성립하려면 구성원에게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는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다. 구성원의 이익을 반영하는 범위나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화 수준에 비례한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한반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행정부 또는 국가 개념에 조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조선인과 조선인 사회에 대해 폭력과 무력을 상징하는 기구일 뿐이었다.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 참정권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적 권리는 물론 식민지배의 다른 형태로서 거론되기도 하는 ‘자치권’조차 전무했던 조선인은 조선총독부를 매개로 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²⁰⁾

조선총독은 일본국왕에 직속된 친임관으로서 조선 주둔 육해군을 통솔하였고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선임되었다.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내각의 감독 대상이 아니었고 총리대신을 거쳐 일본국왕에게 직접 상주하여 재가를 받는, 조선 사회 내에서는 절대적 권력체였다. 1919년부터 조선총독의 군통솔권은 조선군 사령관에 대한 병력사용 청구권으로 바뀌었고 대장을 총독에 임명한다는 제한을 없앴지만 이후 문관이 총독에 임명된 적은 없었다.²¹⁾ 일본국회는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것에 대한 협찬권만 가졌고 사법권 독

19) 정태현, 2007 <미국 역사학계의 한국 ‘민족주의’ 인식>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선인) ; 주익중, 2003 <일제하 한국의 식민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공업화> 《경제사학》 35, 64

20) 1931년부터 지방의회를 의결기구로 전환했지만 결의 내용은 언제라도 조선총독이 무위로 돌릴 수 있었다.

21) 조선 총독의 지위는 총리대신의 감독을 받고 육해군 중장 출신도 임용될 수 있었던 타이완 총독보다 한 단계 위였다. 정무총감 지위도 친임관이었고 타이완총독부 민정장관은 한 단계 아래인 칙임관이었다. 김영숙, 2006 <정군관계로 본 조선총독부의 위상> 《이화사학연구》 33, 330~338
대만에는 일본군이 1개 여단 정도가 주둔했지만 조선에는 1.5개 또는 2개 사단이 주둔했다. 신주백, 2004 <일본의 ‘동화’정책과 지배전략-통치기구 및 학교교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252

립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본과 달리, 조선의 재판소는 조선 총독이 재판소의 구성, 재판관의 자격, 징계 등을 제령으로 규정한 조선총독부 산하조직이었다.²²⁾ 즉 사법권은 행정에 종속된 구조였다. 구성원의 대표 선출 또는 권리의 위임을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부재한 가운데 制令, 府令 등의 제정을 통한 입법권 뿐 아니라 행정, 사법 등 이른 바 3권을 장악한 조선총독의 권력을 제한적으로라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선사회에서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 총독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임명권자인 일본 국왕, 또는 일본 정부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위였다. 조선인 일반의 여론이나 조선인 기업을 의식하거나 그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 의무가 없었다. 물론 식민통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선 사회의 의견을 제한적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럴 의무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시행되는 식민정책의 골간 역시 조선 총독 임명권자인 일본 국왕과 일본 정부의 침략정책과 전쟁 확대 의도에 맞춰 형성되었다. 조선 총독은 이러한 골격에 맞춰 일본 정계에서 점하는 지위에 따라 행정 수행 차원의 ‘독자성’을 행사하는 존재였다.²³⁾ 한반도 구성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것도, 대외적 주권 행사기구는 물론 아니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 한반도 구성원의 주권을 대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공권력에 의한 공적 통치행위”²⁴⁾ 주체가 결코 아니었다. 철

22) 윤선자, 2005 <조선총독부의 통치구조와 기구> 《일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경인문화사) 182

23) 조선 총독이 조선 사회에서 점하는 위상과,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일본 정치계에서 갖는 위상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필자가 중시하는 것은 전자에 있다. 실제로 조선 총독의 법적 지위는 1942년 11월, 일본과 식민지의 행정일원화 조치로 변화하여 내무대신이 조선총독부 사무를 통리하고 총독에게 ‘통리상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윤선자, 위의 글, 186쪽). 이를 두고 일본 정계에서 점하는 조선 총독의 지위와 ‘조선특수성’론에 따라 조선 총독의 재량권이 인정되어 일본에서 시행되는 정책보다 앞서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더욱 일원적으로 통제체제가 구축되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전상숙, 2005 <일제의 식민지 조선 행정일원화와 조선 총독의 “정치적 자율성”> 《일본연구논총》 21). 그러나 식민정책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야 조선 총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내외지 행정일원화와 관련한 초기 연구인 야마자키(山崎丹照)의 《外地統治機構の研究》(高山書院, 1943)는 이전까지와 달리 실제 시정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내무대신의 ‘지시’를 명확하게 규정한 칙령 제729호의 의미를 큰 변화로 평가한다. 이로써 일본의 각성 대신이 조선총독부 각 관련부서에 감독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식민지자본주의 특징으로 거론하는 관세정책이나 금융정책과 관련된 화폐, 은행 및 관세에 관한 사무는 그 이전부터 대장대신이 감독권을 갖고 있었다. 즉 전시체제 상황에서 조선총독의 ‘자율성’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

24) 이영훈, 2007 《대한민국이야기》(기파랑) 73

저하게 무력과 폭력을 동반하면서 분할통치와 수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화를 추구한 외래권력이었을 뿐이었다.

2. 산업자본 보호막—관세주권의 부재²⁵⁾

식민지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관세주권과 금융주권의 부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관세정책은 자본주의 초기단계 이래 자국의 산업이나 시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속한다. 그러나 외래권력으로서의 조선총독부 관세정책은 조선인 자본의 축적과 시장 확보를 위한 보호정책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관세장벽을 없애거나 재정수입원의 비중 때문에 최소화함으로써 일본 자본(상품)의 자유로운 조선 진출을 보장하고 조선을 일본(권)에 종속된 단일경제권으로 통합시켜 조선인 자본의 축적 기회를 억누르는 식민정책 차원에서 운용되었다. 즉 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약화는 일본 상품의 저렴한 유입에 의한 조선인 산업의 경쟁력 약화, 조선의 식량과 자원이 일본으로 저렴하게 유출됨으로써 저임금을 유지해야 했던 일본 자본가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²⁶⁾

조선총독부는 ‘합방’ 후 10년간의 <舊關稅居置期間>을 선포하여 기존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고 발표했다(<韓國合併に關する宣言>). 이는 일본 자력으로 식민지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3국이 “조선에서 갖는 경제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得策”이었기 때문이다. 관세가 1910년대에도 증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후에는 대일무역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세, 연초세 등 다른 소비세에 비해 증가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나 감소했다.

그러나 관세 폐지는 구관세 거치기간에 이미 착수되었다. 1912년 <조선관세정률령>을 통해 8개 품목²⁷⁾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이출세를 이미 폐지했다. 물론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일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점하는 미곡이출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후의 관세는 대부분 수이입세였다.

세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이출세가 폐지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관세정책이 철저하

25) 조선총독부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정태현, 1996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00~106·128~131 참조.

26) 조선인의 국가가 있었다면 일본자본주의의 절대적 필요로 저렴하게 순경제논리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식량에 대해서도 관세주권을 통해 농업잉여의 축적이 가능했고 농공간의 협상가격차에 따른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27) 종가 5%. 소맥, 대두, 소두, 任胡麻子, 生牛, 우피, 석탄, 철광

게 일본 경제에 대한 기여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수출자본이 (대)지주이거나 대부분 일본자본인 상황에서 수이출세 부담은 조선 내에서 과세전가가 불가능하고, 일본 시장에서 원가상승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일본 사회로 과세가 전가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미곡이나 원자재의 무관세 대일 수출은²⁸⁾ 일본 내에서 가격인상 요인이나 과세부담을 덜어주어 저곡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이출세 폐지에 따른 과세혜택은 수출자본과 지주층에게 돌아갔고 일본 내에서의 과세전가가 부담을 덜어주었다. 1919년 초에 개정된 <조선관세정률령>은 8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이출세를 폐지했다. 수이출세의 전폐로 조선의 식량자원 및 공업원료, 지하자원이 일본 자본주의를 위해 아무런 장벽 없이 이출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1920년 구관세거치기간 원료를 계기로 관세 관련 각 제령이 폐지되고 일본의 <관세법>과 <관세정률법>을 그대로 조선에 시행하여 조선경제의 일본권으로의 종속적 편입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대일수출에 따른 이출세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일본경제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일본 내에서의 과세부담을 줄이고 일본경제의 이익을 담당하는 재조선 수출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1920년 이후의 관세는 수이입세만 남게 되었고 결국 수입세에 집중되었다.

수이출세의 급속한 폐지와 달리, 조선총독부는 수이입세 폐지에 대해서는 완만하고 탄력적으로 속도조절을 했다. 우선 수이입세 면세대상은 조선에서 대중적 조세전가가 어렵거나 일본자본주의 발전이나 식민정책 차원에서 필수적인 물품으로 한정했다. 세입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적으로 조세전가가 가능한 소비품에 대해서는 계속 수이입세를 부과했다.

1912년 <조선관세정률령>에서 수이입세 면세대상으로 지정된 30가지 물품은 官需用品 및 군수용품, 광산업에서 금·은·동의 채굴 및 채취사업에 필요한 물품(기계, 기구, 폭발약, 화학약료) 등이었다. 1년 안에 수출하는 물품도 면제대상이었다. 수출용 수이입 품목은 1913년 <조선관세정률령> 개정에서 1년 안에 수출할 수 있는 가공품, 수선품, 제조용품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조선 사회의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자본가에 대한 큰 세 제특혜였다. 수혜대상은 대부분 일본인 자본이었고 수출용 물품은 조선에서 조세 전가가 불가능하기도 했다. 1915년 <조선관세정률령> 개정에서는 면세대상 품목에 철 채굴

28) 1918년의 미국 수이출액은 총수이출액의 40%나 차지했다(1918 《朝鮮總督府統計年報》 366~375). 1910~19년간에 원료·원료용 제품(19.8~22.3%)과 식료품(67.6~69.6%)이 수이출의 90%를 차지했다(《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大藏省 管理局) 通卷 第7冊 朝鮮編 第6分冊, 89쪽).

용품이 추가되었다. 1918년 개정에서는 선철·강철·압연·鋼材·製鉄·제강설비용 기재와 석탄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의 “제철사업 발달이 경제상 국방상 급무”가 되고 “제국의 국시”가 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1910년대 수이입 세 면제대상의 확대는 조선 경제의 산업연관과 무관할 뿐 아니라 일본자본주의 축적과 초과이익 보장을 위해 과세혜택이 일본 대자본에게 귀착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1920년을 전후하여 조선총독부의 관세정책은 대일 수입품에 대한 이입세 철폐에 집중되었다. 이는 수입선의 일본 집중을 의도한 식민지 무역정책의 일환이었다. 예컨대 1919년 <조선관세정률령> 개정을 통해 이입세 면제대상 물품으로 馬과 綿羊이 추가되었다. “군사자원의 충실”을 위해 “우량한 일본산 및 만몽산 馬匹의 수이입 장려”를 촉진하고 일본정부의 “양모자금 방침”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면양사육장려계획을 실시하기 위한²⁹⁾ 것이었다.

대부분의 이입 물품에 대해 이입세가 폐지된 것은 1923년부터였다. 즉 이입세 과세대상 물품을 주정(酒精含有 음료)과 직물로 제한했다. 이후 관세율은 점차 인하되었지만³⁰⁾ 무엇보다 이 2개 품목이 조선 내에서 소비자에게 과세 전가가 가능하여 일정하게 세원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두 부문에 조선인 중소자본이 집중되었지만 이미 일본인 자본이 시장 주도권을 장악한 상태였다. 즉 청주와 같은 일본주나 일본산 직물류 소비자에게 과세가 전가되는만큼 재조선 일본인 자본의 보호정책 의미가 훨씬 큰 것이었다.

3. 금융주권의 부재

통감부-조선총독부의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식민지적 재편은 특수금융기관의 주도 아래 보통은행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면서 통제하는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특수은행과 보통은행의 상호경쟁 및 보완 아래 전자의 비대화와 후자의 상대적 정체라는 식민지 금융의 기본구조가 형성되었다. 특수은행과 보통은행 양자 사이에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특수은행의 보통은행 업무 겸영에 있었다. 일제는 양자에 대해 다른 계통

29) 《明治大正財政史》 18, 631

30) 1927년(3. 31) <제1차 세제정리> 때는 면직물에 대해 종래 세율(從價 7.5%)의 3분의 1을 감한 5% 과세로 개정되었다(제령 제10호). 이를 두고 水田直昌은 “면직물이 민중생활상 필수품으로서 內地(일본-필자)에서는 소비세를 철폐한 데 비추어 민중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라고 시혜적인 의미로 평가했지만(水田直昌 監修, 《總督府時代の財政》 682) 일본산 직물 수요층은 일반 서민이 아니었고 세입원으로서의 의미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다.

의 법률을 적용했다. 즉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보통은행에 대해서는 <銀行條例>(1906 .3 勅令 第12號)와 <銀行令>(1912. 10 制令 第5號)에 따라 통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후발국으로서 자본주의를 조속히 이식·발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이 취약한 현실 때문에 특수은행의 설립과 운영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렇더라도 일본에서는 특수은행과 보통은행간의 분업관계가 분명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의 특권을 가진 특수은행에 대해 자기자본 이상의 예금흡수를 금지시켜 보통은행의 주요 자금원을 보호하는 조치가 수반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형식상 ‘중앙은행’으로 설정된 조선은행이 보통은행 업무까지 취급했고, 보통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보통은행의 발달→특수은행의 분화→보통은행과 특수은행의 분업·공존 형태가 유지된 반면, 조선에서는 보통은행 미발달→이식된 특수은행의 보통은행 업무 겸영→특수은행의 비약적 발전·보통은행의 정체·소멸로 귀결되는 대조적인 금융 양상을 드러냈다. 조선인 자본가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최상의 금융 기구가 보통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은행자본가로 성장하는 길에는 특수은행의 겸업이라는 장벽이 가로놓여져 있었다.³¹⁾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한상룡, 김연수, 박영철, 민영휘 등처럼 친일‘귀족’조차 보통은행의 소유나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조선은행 운영 역시 전형적인 식민지성이 배어 있었다. 먼저 일제가 조선에서 일본은행권을 유통시키지 않고 별도로 명목상 ‘중앙은행’(한국은행, 1911년부터 조선은행)을 설립한 핵심적 이유가 있었다. 즉 일본경제 상태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경이 없는 조선에 일본은행권을 유통시키면 유사시 태환권 기초가 위협받을 우려가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식민지 화폐제도의 일반적 특징은 식민지 화폐를 본국 화폐와 연결

31) 이상은 정병욱, 2000 <식민지 특수은행의 겸업과 보통은행의 정체> 《역사문제연구》 5를 참조하였다. 일본과 조선에서 특수은행과 보통은행이 예금과 대출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연도말	일 본				조 선			
	예 금		대 출		예 금		대 출	
	보통은행	특수은행	보통은행	특수은행	보통은행	특수은행	보통은행	특수은행
1910	73.2	9.7	67.9	22.7	54.2	45.8	49.1	50.9
1920	61.4	19.2	64.7	17.7	44.8	55.2	31.5	68.5
1930	74.1	12.9	63.0	32.6	50.5	38.2	22.8	75.8
1940	75.9	10.4	68.7	29.7	38.9	50.0	19.9	77.7

출처: 정병욱, 2000 <식민지 특수은행의 겸업과 보통은행의 정체> 《역사문제연구》 5, 140

시킴으로서 본국 기업의 상업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교묘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조선은행권 발행준비를 금이 아닌 일본은행권에 의한 지폐준비로 설정한 것이다. 물론 조선은행권 발행을 위해 대한준비로서 일본은행권을 규정한 것은 조선인의 대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일본과의 상품 및 자본거래의 편리를 위해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의 등가교환 관계를 유지하고 단지 재조일본인의 이윤 송금 등의 대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자본이 부족한 일제가 식민지 획득에 따른 모든 비용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해 고안한 화폐발행제도였다.³²⁾

조선은행은 주식회사로서 주주들에게 일정 배당을 해야 했고, 보통은행 업무를 겸영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입장에 있었다. 일반적인 중앙은행과 전혀 다른 기능을 식민지에서 수행하던 셈이다. 즉 조선은행은 일반 사기업이나 보통은행처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데다 발권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중앙은행 기능을 발휘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가령 조선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조선은행이 적정한 통화의 공급과 이자율을 인하해야 하는데, 이러한 통화공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약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은행권 발행에서 정화준비가 30% 이상 차지해야 하는 제약조건에 따랐고, 특히 정화준비의 대부분을 일본은행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조선은행은 조선에서 경기조절과 정화준비 확충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보다 높았던 조선의 이자율을 인하한다면 이는 바로 대출수요의 증대를 불러오고 그 결과 통화증가와 함께 수입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결과적으로 정화인 일본은행권의 유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³³⁾ 더군다나 식민지 시대 조선은 예외적인 몇 개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국제수지가 적자였으므로 무역과 관련해서는 정화가 항상적으로 유출되는 구조였다. 조선은행은 일제의 입장에서 국책은행이었고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구에 불과했다. 1910년대부터 만주에서 보급 활용된 조선은행권은 식민지 기간 동안 대륙침략 침병으로서 일본군과 보조를 맞추어 일제의 점령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화폐였다. 원

32) 吳斗煥, 1991 <植民地時代 韓國의 貨幣制度> 《韓國近代貨幣史》(韓國研究院) 일본에서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그만큼 일본으로부터 대조선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조선은행권 발행제도하에서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된다.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은행권이 조선에서 단지 발권준비를 위해 퇴장되고 실질적인 대일 구매력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도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이에 불과한 것이다.

33) 오두환, 1992 <조선은행의 발권과 산업금융> 《국사관논총》 36, 143

래 중앙은행은 엄격하게 획정된 영토 내에서 국민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선은행이 조선의 중앙은행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³⁴⁾

한편 일제는 보통은행 정책에서도 일본과 근본적인 차별을 설정했다. 우선 ‘화폐정리 사업’ 이후 탁지부가 주체가 된 한국인 은행 규제(<은행조례>. 1906.3), 통감부가 주체가 된 일본인 은행의 한국 내 지점은행 규제(<한국에서의 은행업에 관한 건>. 1907.3) 등 두 방향에서 은행관련법을 제정했다. 한국인에게는 은행을 포함한 각종 금융업에 대해 은행조례를 적용한 반면, 일본인에게는 은행에 대해서만 법규를 적용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일본인들은 많은 유사은행, 즉 제2금융권 기구를 통제받지 않고 운영함으로써³⁵⁾ 토지점탈의 금융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에는 ‘화폐정리’ 과정에서 중앙은행 기능까지 장악한 제일은행을 비롯한 일본 지점은행이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은행업을 독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조선인 보통은행은 탁지부 대여금이나 조선은행 차입금을 매개로 경영권이 종속되어 갔다.

이처럼 조선인 보통은행은 러일전쟁 후 일제의 종속적 육성정책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1897년에 개업한 한성은행은 1905년 말 금융공황으로 휴업 상태에 있다가 1906년 5월 탁지부 대하금을 기반으로 재개업했지만 1911년에 은사공채를 기반으로 최대 규모의 보통은행이 되면서 사실상 일본인은행이 되었다. 1899년에 개업한 대한천일은행 역시 ‘화폐정리’로 휴업 단계에 있다가 1906년 6월 탁지부 대하금으로 재개업했지만 일본인 지배인의 경영통제를 받으면서 이미 일본인은행화하여 ‘합방’ 후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하면서 1919년 말에는 일본인 보유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1906년 서울에서 민간인이 주도하여 설립된 최초의 보통은행인 한일은행은 주예금원이 조선인 사회였지만 1910년대 들어 경영난, 영업망 확대, 경영진 교체를 배경으로 조선은행 차입금이 주요 자금원이 되면서 ‘조선인의 독자적 금융기구’라는 명분도 퇴색했다.³⁶⁾

34) 특히 중일전쟁 이후 조선은행은 일본 전비 조달의 핵심기구가 되어 중국 점령지의 엔계 통화권의 중요 매개고리로 작동하였다. 일제는 1941년 조선은행권 발행제도를 ‘최고발행액 제한제도’로 변경하는데, 이를 통해 중국 점령지와 만주의 엄청난 인플레이션 파고를 조선 경제를 방벽으로 삼아 막음으로써 고스란히 점령지·식민지 민중의 고통으로 전가시킬 수 있었다. 조명근, 2004 <1937~45년 일제의 戰費調達과 朝鮮銀行券 發行制度 전환> 《韓國史研究》 127

35) 정태현, 2000 <植民地化 前後 普通銀行의 經營推移와 二元的 監督體制> 《역사문제연구》 5, 18~21

36) 조선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이승렬, 2000 <일제강점 초기(1906~1919) 대한천일(조선상업)은행과 경인지역 상공인> 《역사문제연구》 5

한일은행에 대해서는 鄭炳旭, 1999 <1910년대 韓一銀行과 서울의 商人> 《서울학연구》 12 참조.

특수은행이 일반적인 상업은행 업무까지 겸영하여 금융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보통은행은 자금 운영이나 경영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웠고 대출초과와 차입금 비중이 커 부실경영과 종속경영으로 기울어졌다. 보통은행은 자금조달기관으로, 특수은행은 자금공급기관으로 이원화되어 가면서 보통은행은 예금 자금조차 자기 경영방식대로 융통할 수 없었다. 또 조선총독부는 1912년 <은행령>을 제정하여 자본 30만엔 이상인 경우에만 보통은행 신설을 허가하여 이미 보통은행의 종속적 대형화 정책을 추진했고 1927년 개정에서는 최소자본금을 당시 일본의 2배인 200만엔으로 인상하여 적극적으로 흡수·합병을 촉진했다.³⁷⁾ 보통은행 합병은 조선총독부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조선상업은행을 축으로 경영난에 따른 중소은행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지만, <은행령> 개정 이후에는 경제논리나 경영난 때문이라기보다 최소자본금 규정이 합병을 사실상 강제했다. 결국 많은 보통은행은 특수은행처럼 경영상 조선총독부의 자금통제를 직접 받으면서 1940년대에 이르면 조흥은행과 조선상업은행 두 은행으로 정리되었다.

4. 식민지자본주의의 귀결

국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확연한 것이었다. 자본가의 축적과 정치적 사회적 리더십은 국가와 정책에 의해 비로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경제학의 경제성장론은 국가 범주를 배제한 채 추상적 자본주의 세계, 즉 존재의 차원이 전혀 다른 식민지자본주의의 특징이나 본질을 이해하는 합리적 분석틀이나 방법론 없이 오로지 시장경제와 기업가만 논한다. 유럽의 자본주의를 토대로 형성된 원래의 이론 자체가 식민지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적용되기 어려운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론을 현실에 조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론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다.

실제로 근대경제학의 경제성장론 식민지 인식에서는 영국(서유럽)의 이행과정에서 도출한 근대 이행의 지표를 거론하면서 국민적 시장경제의 성립, 사유재산제도 성립, 합리적 개인의 영리 추구, 사회와 국가의 분리 등을 거론한다.³⁸⁾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논할 때 정작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 관건인 근대국가에 대한 초보적인 문제의식 자체가 근

37) 정태현, 2001 <1910년대 本店銀行의 신설 급증과 3대은행의 영업·자본 집중> 《東方學志》 112 참조.

38) 이영훈, 1996 <韓國史에 있어서 近代로의 移行과 特質> 《經濟史學》 21, 75~77

원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곧바로 “공적 통치행위”를 수행하는 근대국가로 상정되는 물역사적 단순함에 간혀 있을 뿐이다.

경제성장론 식민지상에 따르면 개항이 국내경제에 가져다 외적 충격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항으로 조성된 수출시장을 배경으로 한 지주의 축적 기반이 근대적 산업구조 형성의 토대로 발전되기 위해 정작 떼어놓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다. 즉 국가의 주권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던 조선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즉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사실상 장악하는 때를 전후하여 식민정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몇 가지 주목되는 정책에 착수했다.

우선 ‘화폐정리사업’은 조선인 상공인들의 축적기반을 일차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즉 일제가 조선에서 일본인 자본의 편의를 위해 재편한 시장경제는 이전까지 조선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창출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인 상공인의 몰락과 금융공황을 불러오고 이 때문에 한성은행과 대한천일은행 등 조선인 보통은행의 문을 닫게 한 화폐정리사업에서 보듯이 이미 존재하던 조선인 상공인의 시장을 일본인 자본의 시장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시장에서 누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시장을 전유할 수 있었는가는 하는 중요한 문제를 사소한 채 시장을 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조선인 상공인들은 일본인 자본이 독점하는 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범주로 전락했다. 또 일본의 사설은행인 제일은행이 중앙은행처럼 대한제국의 국고를 장악했다. ‘합방’ 직후 제정한 <조선회사령>이 갖는 상징적 의미도 특기할만하다, 회사 설립이 외래권력의 허가사항으로 종속된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 자본주의 역사에서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조선인의 국가가 있었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었다.

대한제국이 시행한 양전사업은 토지소유권의 증명이나 이동이 별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조선 사회의 전통을 기반으로 소유권을 법인화하고 세수 확대의 제도정비를 통해 개항 후 일본인들의 불법적 토지점탈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기도 했다. 이미 한성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와 점유를 금지하는 임시법령을 1893년에 제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국가주권의 상실과 더불어 가장 먼저 폐지되었고 통감부는 일본인들이 조선사회의 거래관습에 익숙하지 않아 토지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공표했다. <토지가옥증명규칙>(1906)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1908)은 불법적이었던 일본인들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한 것이었다. 일본인 토지소유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합방’ 후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의 한 특징은 광무양전의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조항을 없앴다는 점이다. 방대한 규모의 황실 소유지는 주로 일본인들에게 불하되어 대지주로 쉽게 성장할 수 있었다.

식민지자본주의란 자국의 기업가를 뒷받침할 국가권력이 없는 가운데 외래 식민권력의 무력을 기반으로 식민지 사회에서 전개되는 자본주의의 운영과 현상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이러한 식민지자본주의 경제는 구성원의 역학관계에 따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발전’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한 주체는 기업가-자본가들이다. 그런데 조선인 기업가들은 일본자본이 주도하고 독점하는 시장경제의 틈새에서 활동영역을 찾는 수동적 존재였다. 이들은 물론 주어진 상황에 주체적으로 적응하고 영역을 넓혀가려고 분투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국가가 부재한 결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묶어내고 관철시킬 제도적 통로가 부재한 가운데 개별적 차원에서 식민지자본주의 경제구조에 수동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주변적 존재에 불과했다.

조선경제의 축적 기반이 되고 결국 축적의 보루가 되는 국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외래권력과 외래자본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식민지자본주의가 보인 ‘개발과 성장’의 귀결은 통상적으로 논의하는 자본주의 그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이러한 식민지자본주의의 귀결을 두고 한국사의 정체성·타율성론에 깊게 젖어 있던 경성제대 교수였던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의 조선 경제에 대한 해방 직후 당시의 평가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는 대륙시장과 블록경제에 의해 일제하에 자원개발과 공업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해방 후 구매력 축소의 이유로 재조선 일본인, 일본자본의 철퇴와 빈농층의 퇴적을 지적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한국경제는 대일 식량공급국으로서 1차산품 수출 및 공업제품 수입에 의한 수직적 한일관계의 재생을 전망했다.³⁹⁾ 즉 40여 년간 식민지 개발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 한국 경제는 여전히 빈농층이 퇴적되어 있는 농업국 이었고, 1942년 현재 총인구의 2.86%에⁴⁰⁾ 불과한 극소수 일본인이 퇴각한 결과 수요가 격감할 정도로 일본인과 일본자본이 주도한 식민지자본주의와 공업화의 실체와 귀결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결국 해방 후의 경제상태가 ‘합방’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⁴¹⁾는 식민지자본주의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필연적 귀결이었다.

39) 송병권, 2002 <1940년대 스즈키 다케오의 식민지조선 정치경제 인식> 《민족문화연구》 3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425 및 418, 원문은 鈴木武雄, 1950 <‘獨立’ 朝鮮經濟의將來>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通卷11冊 朝鮮編 第10分冊 (大藏省管理局 編)

40) 1942 《朝鮮總督府統計年報》 38

41) 대표적으로 허수열, 2005 《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을 들 수 있다.

IV. 맺음말

자본주의 역사에서 국가의 역할과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한국도 국가 주권을 회복한 이후 다른 대부분의 전후 독립국의 경우처럼, 그리고 유럽과 일본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나듯이 경제개발계획 진행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경제에 개입했다. 그런데 냉전체제 붕괴 이후 극성한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면서 강자 독식의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론에 의해 국가의 경제개입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세계화 시대에 일국의 독자적 산업정책이 어렵고 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주장까지 한다. 물론 이는 미국의 세계 주도권 하에서 특히 투기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1990년대 말 한국정부에 대한 IMF의 강력한 ‘경제개혁’ 조치 요구는 그 역효과에 대한 일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사회적 동의가 수반된 것이었다. 이는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개방된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오랜 독재체제를 벗어나 제도적 민주화 과정 속에서 고착되어 갔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맞물린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내용을 채우지 못한 결과는 심각했다. ‘경제개혁’은 극심한 양극분해를 불러와 취약한 복지정책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내수 진작과 실물경제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기보다 비생산적이고 반사회적이기까지 한 거품을 동반하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터전으로 기능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이는 한국 민주화의 결정적인 한계였다. 즉 국가정책과 더불어 사회 전반과 의식 수준이 폭넓고 다양하게 질적으로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였다.

이러한 틈 속에서 국가의 존재 여부와 정책이 자본주의 경제 운영에서 갖는 결정적 의미를 간과한 채 맹목적 시장경제론-근대문명론을 주장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호도하는 역사상이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사회는 21세기 들어 과거사를 정리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게 흘러가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어떤 일본인들에게는 이러한 역사상이 재론되는 것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결코 반가워 할 일이 아니다.

과거와 같은 침략과 전쟁을 반복하지는 것인가? 그러면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한 세기 전의 淸이나 대한제국은 더 이상 동북아에 존재하지 않는다. 침략을 침략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19세기

말 이래 20세기 전반기에 이르는 대외 침략을 당연시하는 일본 사회가 피해자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편견에 매몰되어 있는 한,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하다. 결국 구성원 자신들만 힘들게 할 뿐이다. 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유럽의 민주화 역시 19세기 이래 강력한 국가의 힘에 의존한 대외침략적 자본주의의 틀 내에 머물러 있었던 한계에서 질적 탈피를 못하고 있다. 특히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화 논리는 시장만능론을 매개로 각층의 구성원을 아우르는 기초단위인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국민경제와 국가주권, 나아가서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화의 핵심은 투기적 금융자본이 진출한 국가의 힘과 통제를 풀 것을 강요하여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출 지역의 국가가 자신들의 ‘자유로운’ 투기활동에 저촉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정작 자신들만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강력한 힘을 요구한다. 불평등한 패권적 국제정치학의 수사어에 불과하다.

총체적 의미에서 민주화와 자본주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민주화 내용이 국내의 유산층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제도적 차원의 형식논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한 나라의 민주화는 정치제도적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차원, 그리고 문화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 국경을 넘어 평화와 공존공영의 체제 구축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민주화의 과제는 끝이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의 본문을 통해 여러 차례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자체가 선택하기 때문이라거나 각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평등하게 반영한다는 형식논리 때문은 결코 아니다. 구성원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궁극적 단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 주권의 회복 이후 끊임없는 민주화 과정을 거쳐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포괄하는 각 범주의 내용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의 차원에서 아직은 성숙도가 약하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한계 또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구성원 역시 군국주의적 침략적 국가관을 벗어나 성숙한 민주화를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소 과격하게 말한다면 21세기 한일관계는 60여 년 전의 그것과 여전히 ‘질적’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양국의 민주화 수준과 보편적 인간관에 기초한 성숙도가 그만큼 낮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평문]

아리마 마나부(有馬學)

본 논문의 저자와 기본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학파와 조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평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논문에 서술된 것에 한정하여 감상을 쓰겠다.

평자는 이 논문을 앞에 두고 어떤 의미에서 곤혹스럽다. 어떠한 논자라도 자신이 확신하는 이념을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식민지 경제의 역사적 분석을 대신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과 미래의 인류평화 구축에 적대적이고 반인륜적인 식민사학을 서슴없이 수용하기까지 한다”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루어진 단정에 대해서는 논평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

본 논문은 ‘식민지자본주의’라는 저자의 다소 특이한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장의 기본 줄기는 국가 없이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은 없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것은 저자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 성립의 “원론적 상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첫 두 장은 “국가와 그 정책이 자본주의 경제 성립의 절대적 조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회관계나 시스템을 지탱하는 법과 제도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관계에 대해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절대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근대사의 모든 시스템에서 국가는 절대적 조건이 되고 만다. 저자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는 저자의 사상적인 세계사적 해석의 吐露이기는 해도 ‘역사적 사실의 재확인’은 아니다.

저자가 비판하려는 대상은 명확하다. ‘근대 경제학의 경제성장론의 식민지 인식’이라는 표현은 엄밀하지는 않지만 일단 무엇을 상정하고 있는지는 자명하다. 그리고 논의의 바탕이 되는 식민지 조선에 관한 국민 경제 지표는 ‘근대 경제학의 경제성장론’에 의해 검토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지금은 일본의 독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다[김낙년 편, 2006 《한국의 경제성장 : 1910~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일본어 역) 金洛年 編, 2008 《植民地朝鮮の國民經濟計算 1910~1945》 (東京大學出版會)]. 저자 등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책이 나타내는 식민지기의 국민경제상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

며 비판하는 일이 아닐까.

또한 “해방 후의 경제상태가 ‘합방’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성립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전후 한국의 경제성장이 어디에서 출발하였으며 무엇을 요인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집필자 답변]

한국(근현대)사나 관련 전공자가 아닌 분이 논평을 한다는 것이 필자로서는 일단 의아스럽다. 이번 경우와 달리, 필자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에 참가하여 한국근현대사 전공자로서 일본학자가 쓴 관련 논문에 대해 나름대로 진지한 평을 제시한 바 있다. 평을 하고 비판을 하려면 무엇보다 성실한 읽기가 중요하고 필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요체를 일차적 분석대상으로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평은 초점이 어그러져 있다.

필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식민지 경제를 분석하는데 자본주의 경제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는 기존 연구의 관행적인, 그러나 결정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본주의)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가의 중요성을 ‘상식적’으로 ‘확인’하는데서 출발한다. 논문의 성격도 실증적 분석이라기보다 ‘논리적 접근’에 있다.

평자의 평과 전혀 달리, 이 논문은 “법과 제도” 자체를 논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근대사의 모든 시스템은 모두 국가가 절대적 조건인 것으로 되어 버린다. 저자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평은 필자의 문제의식과 정면대결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좋다, 나쁘다의 평가 차원을 떠나 근대를 이루는 기본 요소라는 점은 상식이다. 따라서 식민지를 인식할 때에도 국가가 없었다는 명백한 사실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조선인을 위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식민지 경제를 분석대상으로 할 때,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를 비상식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따라서 평자는, 조선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가 없는’ 식민지자본주의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틀렸다고 하거나 이를 건드리면서 문제를 제기해야 제대로 된 읽기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필자도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과 미래의 인류평화 구축에 적대적이고 반인륜적인 식민사학을 서슴없이 수용하기까지 한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루어진 단정에 대해서는 논평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

→ 논평을 하건 안하건 그건 평자의 자유이다. 다만 이를 “단정”으로 규정하는 평자가 그만큼 이 분야와 동떨어져 있는 비전문가이고 평을 위해 필요한, 필자의 문제의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거론된 얘기를 논문에

서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연구자라면 이 서술이 뭘 두고 얘기하는지는 다 안다. 근자의 예를 든다면 바로 각주 2)에 있는 《대안고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거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친절함을 요구한다면 필자도 각주에 자세하게 설명해야 부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평자는 “‘해방 후의 경제상태가 ‘합방’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거와 실증의 대표적인 예로 각주 39)와 41)에서 제시했다. 또 필자는 본문 Ⅲ장을 통해 식민지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몇 가지 사례의 식민정책을 통해 조선인(기업가) 일반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는 경제구조였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평자가 제기한 의문은 필자가 서술한 이러한 부분과의 관련 속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다. 막연히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주장과 다른 연구가 있다거나, 식민지 지배의 결과, 과연 해방 후 한국 경제가 크게 나아졌다고 하는 ‘제대로 된 실증’이 있다면 그에 비추어 보니 필자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식으로 평자의 반론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아가서 평자는 “그런 다음 전후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어디에서 출발하였으며 무엇을 요인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제한된 지면에 모든 것을 필자 스스로 실증할 필요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구인 각주 41)의 연구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하다. 필자가 서론에서 밝힌 국가(주권)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본 논문 Ⅱ장의 2절(주권국가 하의 민주화와 생산성)에서 구성원을 의식한 경제성장과 일정 수준의 분배정책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 “국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축적이 가능했던 것은 비록 종속성을 지녔더라도 일차적으로 국가 주권을 회복한 가운데 분단국가의 부실한 내용을 채우려는 민주적 사회분위기를 의식한 국가권력이 이에 능동적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정책을 실행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해줄 국가가 존재하지 않던 일제시대와 오늘날을 비교해보면, 식민지체제의 청산 즉 독립 이후의 국가 수립이라는 것이 기업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차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확연하다.” 이에 대한 통계 근거는 너무나 많다. 다만 경제성장과 제한적이거나 분배를 이루게 된 정치 사회적 배경

에 국가(주권)의 회복과 민주화라는 변수를 빼놓은 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가 표현대로 반론이 “생산적인 논의”로 가기 위해서는 필자가 지적한 이 지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상식을 뒤로 한 채, 평가의 반론은 엉뚱한 방향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평가에게도 역사연구에서 상식이 체화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필자는 상식으로 돌아가 역사적 현실을 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상식을 도의 시하고,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식민지 경제를 분석하는데 마치 국가가 존재했던 상황처럼 설정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론이 될 수 없고 당시의 현실에 대한 이해 또한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의 II장 1절은 ‘역사 연구와 인식’이 상식에 기초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뜻에서 거론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평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도 저간의 연구에서 비상식적으로 배제되었던, 그러나 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환기해야 한다는 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필자가 역사연구에서 되살려야 한다고 제기하는 상식이 틀렸다고 지적한다든지, 필자와 평가 간에 논의의 대극점이 맞아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평가는 필자가 왜 상식을 거론하는가에 대해 평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